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유흥접객행위 단란주점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사하구

훈계대상자 ① 사하구 ○○○○과 지방○○○○○○○○ ○○○

② 사하구 ○○○○과(현, 부산광역시 ○○○○과) 지방○○○○○ ○○○

③ 사하구 ○○○○과(현, ○○구 ○○○) 지방○○○○○ ○○○

④ 사하구 ○○○○과(현, ○구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8. 1.부터 현재까지, 지방○○○○○ ○○○은 2016. 2. 3.부터 2017. 2. 2.까지, 지방○○○○ ○○○은 2015. 2. 2.부터 2017. 2. 2.까지, 지방○○○○ ○○○은 2014. 10. 27.부터 2016. 8. 2.까지 사하구 ○○○○과에 근무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8. 식품접객업의 규정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은 주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란주점 영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7. 타목. 1)에 따라 유홍接客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홍接客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하여 영업주가 이를 알선하여 유홍接客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2015. 10. 15. 이전까지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4조제3항 위반¹²⁹⁾을 적용할지 처벌 법조항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10. 15. 서울행정법원 판결¹³⁰⁾ 및 대법원 판례¹³¹⁾를 인용하여 단란주점 영업주가 도우미를 알선하여 유홍接客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유홍接客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영업주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¹³²⁾하였고, 부산광역시 ○○○○과는 이를 부산광역시 관내 구·군의 ○○○○과(2015. 10. 15)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2015. 10. 15. 이후부터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홍接客원을 알선하여 유홍接客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하여 영

129) 단란주점 영업이 신설('92.12.2)된 이후 법 제44조 제1항 규정이 마련('99.12.29)되었고, 위탁급식영업('03.4.22)과 제과점 영업('05.7.28)이 신설된 이후 제3항 규정이 마련('07.12.21) 되었는바, 제1항은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홍종사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3항은 누구든지(유홍주점업자 제외) 식품접객업 장소에서接客 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기타위반 사항으로 시정명령

130) 2015구단7244, 2015. 8. 21 :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알선소에 연락을 하여 시간당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홍接客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그 돈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든 영업주로부터 지급받든 상관없이 도우미와 영업주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유홍接客원을 고용하였다고 할 것임.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약식명령의 근거 법률조항(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이 아닌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1개월)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131) 2005도9114, 2006. 2. 24: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홍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1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과-0000(2015. 10. 15)

영업정지 1월(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과에서는 2015. 10. 15. 이후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15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 사하구청장, 동래구청장, 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단란주점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
랍니다.